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0-18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15043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21. 6. 8.

판 결 선 고 2021. 8.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0-18

가. 원고는 위생용 종이제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7. 2. 16. 설립된 중소기업으로서 2017. 5. 23. [redacted]시 B 도로 178㎡ 중 40.34/178지분, C 공장용지 1,504㎡, D 도로 550㎡ 중 124.66/550지분과 위 C 지상의 단층 공장 3개동(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7. 2.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58조의3 제1항, 제9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수도권과밀권역 외의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5. 23. 원고에게 당초의 취득세 총 34,546,800원에서 25,910,100원을 감면한 8,636,700원의 취득세를 통지하면서 해당 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의 '감면의무 위반시 추징 안내'란에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라고 기재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28. E주식회사에게 2019. 11.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4. 16. 원고에게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감면요건이 미충족(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되었다며 사유발생일(2020. 2. 28.)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지방세를 자진해서 신고·납부할 것을 통지하였고, 이에 응하여 원고는 2020. 4. 27. 취득세 29,796,6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이 사건 통지서상 의무사용기간이 2년으로 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0-18

재되어 있으므로 의무사용기간 경과 후에 매각한 것에 해당하여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7.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통지서에 '2년'으로 착오 기재하여 안내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징규정의 배제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58조의3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한 경우에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의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은 위 기간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최초 취득일 기준으로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할 사유에 해당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최초 취득 당시에 피고로부터 위 기간을 '2년'으로 기재한 이 사건 통지서를 받고 이를 신뢰하여 위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기간인 3년에서 불과 3개월 정도를 앞두고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0-18

다.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지방세법 제20조에 의하면 취득세는 납부의무자가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도 위와 같은 세액의 신고·납부 시에 같이 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비과세 또는 감면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위와 같은 감면결정 등을 번복하고 다시 과세처분을 할 권한과 의무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 납세의무자로서도 관련 법령의 개정경과 등을 살펴서 적법하게 취득세 신고 및 감면신청 등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의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통지서에 추징관련 기간을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3년으로 기재할 것을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기간인 2년으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관련 기간을 3년이 아니라 2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0-18

으로 하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병가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0-18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0-18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4477호,2016.12.27>

제18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분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대해서는 제58조의3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3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0-18

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끝.